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피해지원기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개별법상 재난·안전 관련 계획의 사전협의 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예방조치의 방법이나 절차, 재난피해 지원실시기관, 사전협의 대상 계획 및 협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반침하 재난을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를 위한 분야별 지원실시기관 규정(안 제20조의2)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권한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 현장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제외사항 규정
(안 제26조제4항)

국가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기타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라. 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등 규정(안 제28조의2, 별표1의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하는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명시하고, 협의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규정 정비(안 제62조, 제66조의3)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대상을 명확화하고, 긴급구조 필요 능력 구성요소 중 전문인력의 자격을 정비함

바. 해양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규정 신설(안 제62조의2)

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의무 등을 신설함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필요사항 구체화(안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장소 및 시기, 긴급안전점검 대상, 행사 중단 및 다중 행산 권고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정 정비(안 제81조, 제88조)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료 징수주체 범위 등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 및 기술료 징수 관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함

자. 사회재난 유형으로 ‘지반침하 재난’ 신설(안 별표1의3)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실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규정한 간접지원 실시기관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간접지원 실시기관
3. 법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을 지원하는 기관 등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 보험, 가족돌봄, 법률상담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5. 자체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등으로서 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에 등록된 기관·단체

6.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활한 수습을 위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2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받은”을 “확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써”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계획의 협의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법 제22조제8항”을 “법 제22조의2”로, “대책”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긴급구조요원”을 “긴급구조지원요원”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한 긴급구조 지원활동 이행 실태

2.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동원된 장비의 현황

3. 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

4.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14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73조의10 및 제73조의11을 각각 제73조의11 및 제73조의12로 하고, 제7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실태조사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를 말한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장소

2.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도로·광장·공원

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서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4.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서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터미널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서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대규모점포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1일 이용객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8.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소

② 법 제66조의12제1항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3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수를 받아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되어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2.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수를 받아 구조·구급대가 출동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다중운집 인원, 공간, 행사 성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1. 행사 중단·다중 해산 등 권고 이유

2. 행사 중단·다중 해산에 따른 권고사항

⑤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장소 주변 교통 및 보행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3. 그 밖에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3조의11(중전의 제73조의10)제1항 중 “법 제66조의12제1항”을 “법 제66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의12(중전의 제73조의11)제1항 중 “제73조의10”을 “제73조의11”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2항제2호”를 “법 제7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8조제2항제4호 중 “기술료의 징수 및”을 “기술료 등의”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더목6) 및 7)을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란에 6)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및 협의 시기(제28조의2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상 계획	협의 시기
가. 교육부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1)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마. 우주항공청	1)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행정안전부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기본계획	전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진방재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6)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사. 문화체육관광부	1) 「공연법」 제3조에 따른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아.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계획의 수립 전
자. 산업통상자원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3)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계획	
	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차. 보건복지부	1)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3) 「혈액관리법」 제4조의5에 따른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카. 환경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9)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타. 고용노동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파. 국토교통부	1)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항공안전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하. 해양수산부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거.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너.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2) 「약사법」 제83조에5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더. 소방청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러. 국가유산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머. 산림청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2) 「산림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해양경찰청	1)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서. 질병관리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전
	2) 「검역법」 제4조2에 따른 검역관리 기본계획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비고 : 위 표에서 규정한 대상계획 이외에 개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u> <u>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u> <u>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u> <u>원실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u> <u>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 <u>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u> <u>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u> <u>정」 제12조제2항 제2호부터</u> <u>제17호까지에서 규정한 간접</u> <u>지원 실시기관</u> <u>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u> <u>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u> <u>정」 제6조제2항 제2호부터 제</u> <u>11호까지에서 규정한 간접지</u> <u>원 실시기관</u> <u>3. 법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라</u>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u> <u>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u> <u>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u> <u>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을</u> <u>지원하는 기관 등으로서 「금</u> <u>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u> <u>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u> <u>금융회사</u>

	4. <u>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 보험, 가족돌봄, 법률상담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단체</u> 5. <u>자체 재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등으로서 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등록된 기관·단체</u> 6. <u>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원활한 수습을 위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u>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u>경우</u>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 ----- ----- ----- ----- <u>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u>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 확정된 -----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 ③ (생략)

④ 삭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 통보-----
-----.

----- 통보-----
-----.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

-----.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관의 장”으로써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계획의 협의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1항-----

----- 법 제25조제1항-----

-- 법 제22조의2 ----- 사항

--.

② · ③ (생략)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 6.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긴급구조지원요원----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한 긴급구조 지원활동 이행 실태

2.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동원된 장비의 현황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3. <u>긴급구조지원요원의 전문성</u> 4. <u>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u> 5. <u>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u> 6. <u>긴급구조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 ----- ----- ----- -----. 1. ----- ----- 가. -----
--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 다. (생략) 2. ~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 7 시간 ----- 나. ----- 1 년 -----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실태조사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 제1항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를 말한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장소 2.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도로·광 장·공원 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서 1 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 역사 4.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항으로서 1일 이용
--	---

객 1만명 이상인 공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터미널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서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대규모점포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1일 이용객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8.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소

② 법 제66조의12제1항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3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받아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되어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2.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받아 구조·구급대가 출동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다중운집 인원, 공간, 행사 성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1. 행사 중단·다중 해산 등 권고 이유

2. 행사 중단·다중 해산에 따른 권고사항

⑤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장소 주변 교통 및 보행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관계기관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3. 그 밖에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
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 법 제66조의13제1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
-- 제73조의11-----

를 보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삭 제>

<삭 제>

법 제73조제2호-----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 제73조에 따른 <u>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u> ③ ~ ⑥ (생략)	<u><삭 제></u>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기술료 등</u>의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4124